(별첨)

1.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임 기	추천인
이용한	1954.04.06	사내이사	본 인	3 년	이사회
장홍식	1959.09.24	사내이사	해당 없음	3 년	이사회
김형호	1962.01.22	사외이사	해당 없음	2 년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체납사실 열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용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장홍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형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용한	㈜원익 회장	1981 2015 1981~현재	원익통상 대표이사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회장 ㈜원익 회장	해당 없음
장홍식	㈜원익 대표이사	2006 2016~2019 2020 ~ 현재	㈜위닉스 부품 사업본부장 ㈜위닉스 대표이사 사장 ㈜원익 대표이사 사장	해당 없음
김형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1995~1997 2016~2022 2023~현재	동아대학교병원 외과 전임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장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해당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김형호 사외이사 후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채권자・종업원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 시킬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1) 경영의사결정의 적극적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성원들과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림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조하고자 함.

2) 회사의 이익보호

경영진이나 특정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강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일조하고자 함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또한 (주)원익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1) 이용한 사내이사 후보

이용한 사내이사 후보자는 오랜 기간 원익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업무 경험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 수행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2) 장홍식 사내이사 후보

㈜위닉스, ㈜원익 등에서 다년간의 대표이사 경험을 쌓아왔으며, 산업분야에서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영 활동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회사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익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3) 김형호 사외이사 후보

해당후보는 의료기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상근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임 기	추천인
홍재선	1964.01.26	상근감사	해당 없음	3 년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 내역
		기간	내용	
홍재선	한경회계법인 대표이사	2010~2022 2009~2019 2004~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 (재)한국교과서 연구재단 감사 한경회계법인 대표	해당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열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홍재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1) 홍재선 상근감사 후보

해당 후보는 회계법인 대표 및 (재)한국교과서 연구재단 감사를 역임하는 등, 법률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있으며 최대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감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상근감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신구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조[지급대상]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② 직원에서 임원승진으로 인한 계속근무인 경우 **제9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퇴직금의 지급방법】** 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또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통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 대상】** ①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2. 직원에서 임원승진으로 인한 계속근무인 경우 ②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 퇴직연금제도 기준 명확화

제4조【퇴직금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임원퇴직금 = 평균임금×재임일수 ②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은 제①항의 금액 및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임원의 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불입한 금액을 말한다. ③ 임원의 퇴직금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되, 회사는 각 퇴직연금 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각 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5조【평균임금】** 임원의 평균임금은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의 기본급여 총액을 3등분 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등분 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6조【재임 기간계산】** ①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조【특별위로금】** 생략 **제8조【퇴임월급여】** **생략** **제10조【법령적용】** 임원의 퇴직금지급에서 이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중에서 지급액이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①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이 퇴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임원 퇴직금 = 평균임금×재임일수/365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간의 기본급여 총액을 3등분 한 금액과 퇴직 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등분 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재임일수는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수준】** ①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퇴직금으로 매년 말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각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 * 임원 DC부담금 = 연봉액×1/12 ② 제1항에 따른 '연봉액'이라 함은 기본급여, 상여금 등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③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이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적립을 신청한 경우 경영성과급의 100%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각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 **제7조【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및 사용자부담금 수준】** ①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이 퇴임할 경우 제5조 제1항에 따른 급여수준에 99%를 곱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매년 말일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수준에 1%를 곱한 금액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각 임원의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DC 계정에 납입한다. ②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이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을 신청한 경우 제6조제3항의 적립비율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각 임원의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DC 계정에 납입한다. **제8조【특별위로금】: 조 변경 (제7조에서 제8조로 변경)** **제9조【퇴임월급여】: 조 변경 (제8조에서 제9조 변경)** **제10조【법령 등의 준용】** ① 임원의 퇴직금지급에서 이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중에서 지급액이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경영성과급 퇴직연금제도 기준 명확화